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40 |
|----------|-----|

2023. 12. 14.  
도시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0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단지 중 지원금액 한도 이상 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늘어나, 지원금액 한도를 실정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담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기준(안 제5조 3항)

제5조제3항 중 “2천만원” 을 “2천5백만원” 으로 한다.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본 개정조례는 현행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가 2천만원으로 이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사업포기 단지가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, 지원금액 한도를 5

백만원이 증가된 2천5백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